

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1995. 9. 13.

교육사회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출일자 : 1995년 9월 4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9월 4일

나. 상 정 일 자 :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1995.9.13)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관리국장 신재철)

가. 제 안 이 유

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(법률 제4,795호, 1994.12.22)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4,646호, 1995.5.16)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(이하 "관리 계획"이라 한다)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 골 자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함.

-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함.
-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던 것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함.

#### 4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,

본 조례안은

-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이  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던 것을 "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"로 개정되고
- 지방재정법 2,3항이  
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2항으로 개정되는 등
-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 의 및 답 변 : 없 음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9. 조 례 안 : 별 첨

10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